



본 구매 주문서 약관("약관")은 그 각 개별 구매 주문서("주문서"), 사용 지침서, 설명서, 훈련 도구, 시스템 설명서, 명세서,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총칭하여, "PO")에 대해 기술한, 판매자의 모든 자료와 함께 주문서에 명시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계열사("Thomson Reuters")와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판매자") 사이에 체결된다.

**1. 정의.** "계열사"는 수시로 Thomson Reuters Corporation 또는 Thomson Reuters PLC를 직, 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혹은 지배를 받거나 공통의 지배하에 놓인 모든 회사, 그리고 Thomson Reuters Corporation 또는 Thomson Reuters PLC, 혹은 그 모든 영업과 자산을 수계한 (개명, 해산, 흡수, 합병, 구조조정, 매각, 혹은 기타 모든 처분에 의하든 상관없이) 모든 회사를 의미한다. "제품"은 주문서에 명시된 대로 Thomson Reuters가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모든 장비, 물품, 그리고 다른 모든 상품들을 의미한다. "서비스"는 주문서에 명시된 것으로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훈련, 설치, 배치, 보수 및 유지관리 기타 지원 등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2. 주문서.** Thomson Reuters는 판매자에게 주문서를 발급함으로써 판매자로부터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고, 판매자는 그 제품 및 서비스를 주문서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PO 이행에 있어서 시간은 업수되어야 한다. 판매자가 본 약관에 의거 이행을 개시하면 PO 및 주문서를 승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Thomson Reuters의 서면 승인 없이는, 판매자는 주문서에 관하여 가격, 수량, 배달, 설치 일시, 혹은 이외의 조건들을 수정할 수 없다. 판매자는 Thomson Reuters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품의 변경이나 초과발송을 할 수 없다. Thomson Reuters는 Thomson Reuters의 의무, 제품의 수량, 배달 일정, 실험 방식, 도착지 등을 포함한 주문서의 조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변경을 서면으로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는 상당한 수준의 추가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변경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단, 해당 주문서는 그 변경에 따라 수정된다. 판매자는 그런 변경이 상당한 수준의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경우 즉시 Thomson Reuters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제품의 배달.** 배달 일시 당일이나 그 전에 Thomson Reuters로부터 서면으로 별도로 요청받거나 승인받지 않는 한 판매자는 주문서를 일시에 전부 이행해야 한다. 판매자는 모든 사용 설명서, 제조사 보증서 등 제품의 제조사가 제품과 함께 유지되기를 의도한 모든 물품들을 배달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판매자는 모든 발송물, 발송 서류, 송장, 그리고 서신을 주문서 번호와 항목별로 배열된 제품 및 서비스 목록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송 조건은 주문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판세지급필인도 조건(목적지 지명)을 따른다(인코텀스 2010). 경우에 따라 판매자는 Thomson Reuters로 보내는 송장에 실제 화물운송비용만 포함시킨다.

**4. 반환.** Thomson Reuters는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제품을 원래의 포장 하에 신품으로 재판매 가능한 상태로 Thomson Reuters의 제품 영수증을 첨부해서 판매자에게 반환하여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단, 특별 주문의 경우 또는 구식 제품의 경우 불량품이 아닌 이상 반환할 수 없다. 모든 허용된 제품 반환에 대해 Thomson Reuters는 판매자에게 반송 의도를 통보해야 하며 Thomson Reuters의 통보 후 24시간 이내에 판매자는 Thomson Reuters에게 반송물품 인증번호("RMA")를 할당, 제공해야 한다. 만약 반환이 Thomson Reuters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반환물품의 발송 조건은 지급화물도 조건(목적지 지명)을 따른다(인코텀스 2010). 다른 모든 제품 반환의 발송 조건은 공장인도 조건을 따른다(인코텀스 2010).

**5. Thomson Reuters의 절차 준수, 보험.** 서비스가 Thomson Reuters 소재지에서 실행될 시 판매자측 직원은 Thomson Reuters의 보안 절차, 규칙, 규정 및 방침(수시로 개선되는 것에 따라)을 준수하여야 하며 Thomson Reuters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 판매자는 Thomson Reuters의 공급망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Thomson Reuters의 공급망 윤리강령은 이러한 참조로 본 PO에 포함되며 다음의 주소에 게시되어 있다:  
<http://thomsonreuters.com/about-us/corporate-responsibility/marketplace/supply-chain-ethical-code/>. 판매자는 제품 및 서비스로부터 초래되거나 관련된 모든 피해, 채무, 그리고 책임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보험을 자비로 유지해야 한다.

**6. 환경법, 보건법과 안전법.** 위험성이 잠재된 모든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판매자는 Thomson Reuters의 위험관리부서에게,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사용될 관할권에 적용되는 환경법, 보건법 및 안전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7. 가격.** 가격은 해당 주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판매자는 Thomson Reuters에게 Thomson Reuters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제품 수량 할인, 가격인하, 그리고 판촉행사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별도로 제품 및 서비스에 허가되어 있지 않는 이상 Thomson Reuters는 판매자가 그 의무를 다 하거나 Thomson Reuters가 그 제품 및 서비스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별도의 추가부담을 지지 않는다.

**8. 송장, 지급, 조세.** 판매자는 제품의 발송 및 서비스의 이행에 있어 Thomson Reuters에게 송장을 제출한다. 쌍방의 이의가 없는 판매자의 송장에 대한 금액을 Thomson Reuters가 정식 수령한 날로부터 50일 후에 오는 월요일에 판매자에게 지급하기로 동의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Thomson Reuters로부터 수령할 대금에 대하여 Thomson Reuters는 본 약관상 발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다. Thomson Reuters는 어떠한 Thomson Reuters 명의의 구매카드, 회사 수표나 전신환을 이용해서든지 판매자에게 지급을 할 수 있다. 가격은 제품 및 서비스 세, 부가가치세, 판매세, 이용세, 소비세, 거래세 등의 어떠한 관련 조세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세금이 적용될 시, 판매자는 이들을 송장에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Thomson Reuters는 판매자의 순이익에 의한 어떤 조세공과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쌍방의 이의가 없는 송장에 대해서 지급일이 지난 이후 미지불 잔액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배상은 성가포르 소재 은행의 기준대출이자율보다 연리 2% 이상을 적용한 자연이자의 수령이 전부이다. 이자는 수시로 재계산되며 그 이자는 월단위로 발생한다.

**9. 보증.** 판매자는 Thomson Reuters에게 다음의 내용을 진술 및 보장한다:

(가) 판매자는 관련법에 의거 적법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다; (나) 판매자는 PO를 개시하고 본 약관 소정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 허가 및 권한을 보유한다; (다) 본 약관 소정의 판매자의 의무 이행은 어떠한 관련법도 위반하지 않는다; (라) 본 약관 소정의 판매자의 의무 이행과 Thomson Reuters의 제품 및 서비스 사용으로 어떠한 제3자의 지적 재산권도 침해되지 않는다; (마) 제품 및 서비스는 어떠한 담보권이나 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본 약관 소정의 판매자의 의무 이행과 Thomson Reuters에게 부여된 권리의 행사에 있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실재하는 주장이나 그 발생이 위협되는 주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바) 판매자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그 피고용인과 계약자와 적절한 계약관계를 가진다; (사) 제품 및 서비스는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Thomson Reuters를 만족시킬 수준으로 작동한다; (아) 판매자가 제품 및 서비스는 원래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고, 동 목적이 판매자에게 알려진 경우, Thomson Reuters는 판매자의 판단과 선택에 의존한다; (자) 제품은 신품이며 기사용, 재제조, 수리된 것이 아니다; (차) 판매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태도로 서비스를 이행한다. 제품 및 서비스가 위 진술 및 보장 그리고 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시 판매자는, Thomson Reuters의 다른 권리와 배상을 제한함 없이, 자비로 즉시 당해 제품을 수리하거나 적절한 신품으로 교환하거나 서비스를 적절하게 재이행한다. 단, 어떤 경우에도 Thomson Reuters는 이런 수리, 교체, 재실행 대신에 모든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다.

**10. 배상.** Thomson Reuters에 대해 제기된 모든 소송, 청구, 요구,

절차("청구") 및 모든 배상, 손실, 피해, 판결, 합의, 비용(적절한 수준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손실")에 대하여 동 청구 및 손실이 판매자나 판매자 측 피고용인, 하도급업자, 대리인의 어떠한 작위, 부작위, 고의와 관련되거나, 본 약관 소정의 진술 및 보장, 계약, 약정 등의 위반에 관련되거나, 본 약관 소정의 의무 이행 중 인명이나 재산에 대해 발생된 손해 및 침해 등 관련된 경우, 판매자는 자비로 Thomson Reuters를 방어하고, 배상하고, Thomson Reuters에게 아무 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밀 정보.** 판매자가 Thomson Reuters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입수한 모든 물품(물질,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공구와 도구를 포함하지만 그것에 한정되지 않음)과 정보(구두, 서면, 영상, 시각, 그리고 전자 정보를 포함하지만 그것에 한정되지 않음), 그리고 판매자나 그 대리인이 준비한 것으로서 Thomson Reuters가 제공한 위 정보를 포함하거나 반영하는 분석, 편집물, 연구, 혹은 다른 문서(총칭 "기밀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며 Thomson Reuters의 독점적인 재산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Thomson Reuters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에만 제품 및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에게 공개되어 사용될 수 있다. 만약 기밀 정보가 (가) 판매자나 그 기밀 정보를 전달하는 어떠한 사람에도 의하지 않은 채 공공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나) Thomson Reuters가 판매자에게 공개하기 전 이미 판매자에게 알려져 있거나 판매자가 비기밀 상태로 소유하고 있었고; (다) 그 기밀 정보의 이용이나 참고 없이 판매자가 독립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을 판매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그 기밀 정보에는 본 제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 제11조는 본 약관 소정의 의무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12. 권리 양도.** 판매자는 본 약관으로써 별도의 약인없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생산품의 전세계적 권리, 소유권, 그리고 이익(동 지적재산권의 등록, 신청, 개신 여부와 상관없이 현존하거나 미래에 존재할 그런 생산품의 모든 지적 재산권을 포함)을 Thomson Reuters와 그 승계인에게 양도하며 그런 생산품에 관련된 모든 도덕적 권리(포기하거나 포기하도록 한다).

**13. 홍보 금지.** Thomson Reuters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판매자는 어떠한 광고, 홍보 자료, 고객 명단, 판촉이나 다른 출판 자료에도 본 약관이나 Thomson Reuters의 명칭, 상표명, 상표, 서비스 마크를 공개, 사용, 혹은 언급하지 못한다. Thomson Reuters는 위 동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4. 독립적 계약자.** 판매자는 Thomson Reuters 비독점적, 독립적 계약자다. 판매자측의 직원이나 대리인은 Thomson Reuters의 직원이 아니며 Thomson Reuters가 Thomson Reuters의 직원에게 제공하거나 법적으로 시행되는 어떠한 이익이나 특권도 누릴 수 없다. 판매자는 Thomson Reuters를 대신하여 어떠한 명시 또는 묵시의 채무도 인수하거나 발생시킬 수 없다.

**15. 종료.** Thomson Reuters는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로도 판매자에게 서면

통보를 통해 본 약관 소정의 의무를 이행을 전제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 만약 별도의 지시가 없을 시, 그 통보를 수령하는 즉시 판매자는 본 약관의 이행과 관계된 모든 물품, 설비, 그리고 공급품의 주문서와 모든 업무를 중단하며, 향후 비용이 부과될 수 있는 모든 협약하는 주문서와 하도급 계약을 취소하고 종료한다. Thomson Reuters는 판매자가 종료 통보를 수령하기 전에 구입, 배달되어서 Thomson Reuters가 수령한 물품 비용의 잔액의 지불 이외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품 및 서비스의 다른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만기와 종료 이후에도 효력이 있는 약정들은 계속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다.

**16. 양도.** 판매자는 Thomson Reuters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품 및 서비스 하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하도급 계약, 양도,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전하지 못한다. 단, Thomson Reuters는 부당하게 그 동의를 거부하거나 보류, 지연하지 않는다. Thomson Reuters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실행된 어떠한 양도도 전부 무효이다. 양도가 허용되는 권리와 의무의, 하도급 계약, 양도, 혹은 기타 이전에 대하여 판매자는 피양도인의 작위와 부작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또는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Thomson Reuters는 본 약관 소정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든지 다른 제3자에게 하청, 양도, 혹은 기타 이전을 할 권리가 있다.

**17. 법의 준수.** 당사자들은 관련국에서 모든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법률 및 규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18. 권리의 포기.** 어떠한 교섭과 이행의 추이 혹은 어떠한 약관 조항의 미집행도 당사자의 권리포기로 해석되지 않는다.

**19. 구제,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 본 약관 소정의 Thomson Reuters의 권리와 구제방법은 누적적이며 보통법이나 형평법 상의 다른 어떠한 권리와 구제에도 추가된다. 본 약관 소정에 근거 발생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라도 Thomson Reuters는 모든 비용과 적절한 수준의 변호사 비용을 전액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20. 준거법.** 본 약관에 근거하거나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사건은 싱가포르 법에 의해 관할되고 해석된다.

**21. 일부 무효.** 본 약관의 어느 조항이 무효나 이행불능으로 판명될 시, 동

조항은 본 약관에서 삭제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래 조항에 동의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도를 가장 가깝게 달성할 수 있는 유효하고 이행 가능한 조항으로 교체된다. 본 약관의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하다.

**22. 우위권.** 본 약관의 조항과 불일치하는 사전 인쇄된 인용구, 승인, 송장, 혹은 유사 문서에 있는 조항은 본 약관에 의하여 대체된다. 제품과 동봉된 면허 조항은 서로 불일치하지 않는 부분의 제품 조항을 보충한다. 면허 조항이 본 약관의 조항과 불일치할 시 본 약관의 조항을 우선한다. 판매자와 Thomson Reuters가 본 약관에 대해 서명한 별도 합의서가 있을 시 동 합의 내용이 본 약관에 우선한다.

**23. 전체 합의.** 위 제22조에서 별도로 허용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약관은 당사자 간의 전체적 합의를 구성하고 당사자 간의 본 약관 소정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이전의 서면, 구두합의에 우선하며, 서명한 문서만으로 이를 변경시킬 수 있다. 본 제23조의 어떤 내용도 사기나 공갈에 따른 당사자 책임을 면책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24. 제3자의 권리.** 본 약관에 포함된 면책조항의 적용 하에서 그리고 Thomson Reuters 계열사의 별도 동의 없이 본 약관의 당사자들이 본 약관 소정의 조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싱가포르의 계약(제3자의 권리) 법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CRTP Act") (Chapter 53B)(수시로 개정되는 내용 포함)에 의거 제3 수혜자로서 본 약관의 조항을 판매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Thomson Reuters의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3자도 CRTP 법령(수시로 개정되는 내용 포함)에 의거 본 약관 소정의 내용을 집행할 권리가 없다.

**25. 통보.** 본 약관 소정의 통보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인편이나 등기 우편으로 당사자의 주소로 배달될 수 있다. 통보를 수령하는 당사자의 서면 확인서 발급 후에야 통보는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26. 분쟁 해결.** 본 약관에 기인하거나 관계가 있는 어떠한 분쟁, 논란, 혹은 청구 및 본 약관의 위반, 종료, 혹은 무효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국제 중재센터("SIAC")의 중재 규칙(싱가포르 국제 중재센터 규칙, 제2판, 1997년 10월 22일 및 그 개정안 포함)에 따라서 싱가포르 내의 중재 재판소에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중재 재판은 세 명의 중재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영어로 진행된다.